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56
----------	------

2013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6월 12일, 장정숙의원(23명 찬성)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장정숙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유물기증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동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에 대한 정의를 유·무형의 문화재로 규정함(안 제2조).

-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수집 대상을 서울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구체화함(안 제3조).
- 유물거래의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유물 구입방식에 현장구입을 추가함(안 제4조).
- 유상기증에 관한 절차는 유물구입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무상기증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5조).
- 현재의 직제에 맞지 않는 명칭을 수정함(안 제8조).
- 유물구입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입유물과 함께 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유물이미지 복제 및 촬영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안 별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관련 부서와 협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조례안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유물기증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수집 범위를 유·무형의 문화재로 확대하고, 박물관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유물수집 대상을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유물거래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매도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던 유물구입 방식을 확대하여 현장에서도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물의 유상기증에 대해서는 유물구입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무상기증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임.

또한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의 명칭이 다른 것을 수정하고, 분야별 유물구입평가위원회는 유물구입에 따른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소장유물과 함께 보존하도록 하며, 상업적 목적의 유물촬영과 이미지 복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를 마련한 것임.

- 그 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2조제1호에서 유형의 문화재를 유·무형의 유산으로 수정한 것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조사, 연구, 수집의 범위가 유형의 문화재로 제한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는 서울의 역사와 관련된 영상 또는 소리 등을 연구·보존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신각 타종소리”, “남대문시장의 소리”, “2002년 월드컵 합성” 등 서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무형의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서울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안 제3조에서 “인류의 역사”를 “서울의 역사”로 수정한 것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수집·연구하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구입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유물구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이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특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 안 제4조제1항은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운영자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한 것임.

이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회는 “기획·유물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삭제하려는 “기획·유물분과위원회”는 서울역사박물관의 개관을 위하여 구성된 “개관운영준비위원회”의 소위원회였으나, 2002년 개관 이후 개관운영준비위원회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로 바뀌면서 없어진 위원회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제2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의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구입 방식은 유물매도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유물을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해외 시장에 나온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를 찾아 서울역사박물관에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매도자가 이를 수락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유물구입의 결과는 심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역사와 관련된 값진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유물을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제2항에서 유상기증은 유물의 구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무상기증에 대해서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임.

이는 기증자가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의 기증사례비를 요구하는 유상기증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기증사례비를 요구하지 않는 무상기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성된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유물기증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기증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9조”로 수정한 것은 조례명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시장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동 조례 제9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안 제8조에서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당연직인 “유물보존과장”을 “유물관리관”으로 수정한 것은 유물보존과장의 명칭이 현재는 “유물관리과장”이어서 현재의 직함과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물관리관”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평가위원회가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유물과 함께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동 조례의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수집유물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 후단을 신설하여 소장품을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시·도 박물관들은 현재 유물대여 및 사진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장유물의 촬영 및 복제를 위한 대여 신청이 서울역사박물관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이미지 대여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39건, 2011년 169건, 2012년 32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다른 박물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촬영 및 복제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동 조례안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유물의 개념, 수집 범위, 수집 대상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기증유물의 수집에 관한 절차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를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유형의 문화재로서”를 “유·무형의 유산으로서”로 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인류의 역사,”를 “서울의 역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유물구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이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상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무상기증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 본문 중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9조”로 한다.

제8조제3항의 “유물보존과장”을 “유물관리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이 서명한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유물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본문 하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유물복제 수수료(제15조 관련)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복제	특수촬영(3D 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방송촬영(비디오)	1점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점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진복제	필름(4"×5"/컬러, 흑백)	1매	30,000원	
	디지털 데이터(대)	1파일	30,000원	11"×14"(300dpi)
	디지털 데이터(중)	1파일	20,000원	6.5"×10"(300dpi)
	디지털 데이터(소)	1파일	5,000원	5"×7"(300dpi)이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유물"이라 함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u>유형의 문화재</u>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p> <p>2. ~ 7. (생략)</p> <p>제3조(유물수집대상) 유물수집대상의 범위는 <u>인류의 역사</u>, 문화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p> <p>제4조(유물구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u>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를</u>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p> <p>② 시장이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도 <u>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u>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u></p> <p>제2조(정의)</p> <p>1. <u>유·무형의 유산</u>으로서</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 3 조 (유 물 수 집 대 상) <u>서울의 역사</u></p> <p>제4조(유물구입) ①</p> <p>② <u>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u>는</p>

현행	개정안
<p>제5조(유물기증) ① (생략)</p> <p>② <u>기증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u></p> <p>③ (생략)</p> <p>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에서 구입한 유물에 대하여는 <u>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u>에서 정한 평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 <u>유물보존과 장</u>을 당연직으로 하여 박물관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9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p> <p>① ~ ④(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5조(유물의 대여 등)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유물기증)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유상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무상기증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u> <u>제9조</u></p> <p>제8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유물관리관</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p> <p>① ~ ④(현행과 같음)</p> <p>⑤ <u>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이 서명한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유물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u></p> <p>제15조(유물의 대여 등)</p> <p><u>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1〕</p> <p>유물복제 수수료(제15조 관련)</p> <p>〈신설〉</p>	<p>〔별표1〕</p> <p>유물복제 수수료(제15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35%;">내역</th> <th style="width: 10%;">수량</th> <th style="width: 15%;">요금</th> <th style="width: 3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유물복제</td> <td>특수촬영(3D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원</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td> </tr> <tr> <td>방송촬영(비디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원</td> </tr> <tr> <td>일반촬영(사진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원</td> </tr> <tr> <td>탁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원</td> <td>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td> </tr> <tr> <td></td> <td>정밀실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원</td> <td>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사진복제</td> <td>필름(4"×5"/컬러, 흑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1매</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원</td> <td></td> </tr> <tr> <td>디지털 데이터(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1파일</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1"×14"(300dpi)</td> </tr> <tr> <td>디지털 데이터(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1파일</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5"×10"(300dpi)</td> </tr> <tr> <td></td> <td>디지털 데이터(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1파일</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7"(300dpi)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복제	특수촬영(3D 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방송촬영(비디오)	1점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점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진복제	필름(4"×5"/컬러, 흑백)	1매	30,000원		디지털 데이터(대)	1파일	30,000원	11"×14"(300dpi)	디지털 데이터(중)	1파일	20,000원	6.5"×10"(300dpi)		디지털 데이터(소)	1파일	5,000원	5"×7"(300dpi)이하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복제	특수촬영(3D 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방송촬영(비디오)	1점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점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진복제	필름(4"×5"/컬러, 흑백)	1매	30,000원																																								
		디지털 데이터(대)	1파일	30,000원	11"×14"(300dpi)																																							
디지털 데이터(중)		1파일	20,000원	6.5"×10"(300dpi)																																								
	디지털 데이터(소)	1파일	5,000원	5"×7"(300dpi)이하																																								